

의안 번호	1762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보 고 서</p>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3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5. 31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6. 15.(화)

2. 제안이유

- 가. 행정안전부 “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”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강화 및 개방성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,
- 나. 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’에 따라 일본식 표현,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불명확한 단어 및 문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기준 하향 조정 및 외국인 주민 참여 개방(안 제8조)
 - (현행) 만19세 이상 ⇒ (변경) 만18세 이상
 -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 부여
- 나. 주민자치회 전문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원 선정기준 변경(안 제9조)
 - (현행) 공개모집 선정
 - (변경) 공개모집 70%, 각급학교·기관·단체 및 동장 추천 30% 선정
- 다.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 연임가능 횟수 2회에서 1회로 조정(안 제11조)
- 라. 주민자치회 간사를 위원 또는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(안 제18조)
- 마.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 규정(안 제25조)
- 바. 일본식 표현, 어려운 한자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

4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~ 제29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부터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 27조에 따라 설치 지원하고 있는 동 주민자치회 운영을
-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된 “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”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해결 하고, 자생력을 키워가는 주민참여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불명확한 문장 등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
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